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2025년 하반기부터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타워크레인 설치·해체기능사 자격 검정이 시행됨에 따라 타워크레인 설치·해체 작업의 자격기준에 해당 자격을 추가하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생략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의 : 해당기관 없음
- 라. 기타 : 입법예고(2024. 12. 11. ~ 2025. 1. 20.)

유해·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

유해·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별표 1 제2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21. 타워크레인 설치(타워크레인을 높이는 작업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·해체 작업		1)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타워크레인 설치·해체기능사의 자격 2) 이 규칙에서 정하는 해당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－ 수료시험 합격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－ 이 규칙에서 정하는 해당 교육기관에서 보수교육을 이수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3)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판금제관기능사 또는 비계기능사의 자격(2025.
--	--	--

		12.31.까지 해당 자격을 취득한 자로 한정한다)
--	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